

학습자료

(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1)

■ 1차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

*인터넷중독

-인터넷중독은 정보 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정신적, 사회적,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로, 사이버 중독, 인터넷 중독 질환, 병적 인터넷 사용, 인터넷 증후군, 웨버홀리즘(Webaholism)이라고 불리기도 한다.

-인터넷 중독을 탈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일지를 작성하고 인터넷 과다사용 원인을 찾으며, 규칙으로 시간을 관리한다.

-인터넷 사용에 있어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적으로 인터넷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중독이라 한다.

*음란물 중독

-음란물 중독이란 섹스나 포르노 등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강박적으로 계속 드나드는 경우를 말한다.

*인터넷중독의 유형 중 정보검색 중독의 증상

- 무의미한 웹서핑을 한다.
- 불필요한 정보를 찾는다.
- 인터넷에서 본 인상 깊은 것은 뭐든지 닥치는 대로 수집한다.
- 정보검색 중독자는 시간이 나면 자료를 편집하리라 생각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.

*인터넷 중독 탈출 및 예방법

-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연습한다.
- 생활우선순위를 세운다.
- 컴퓨터 없는 휴일을 만든다
- 인터넷 사용일지를 작성
- 인터넷 과다사용 원인을 찾는다
- 규칙적으로 시간을 관리한다.

■ 2차시 산업안전개론

*산업안전보건의 목표

-인명존중(안전관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도주의이다)

- 경영경제(안전보건은 손실관리 차원의 기업경영 기법이다)
- 사회적 신뢰(안전한 직장은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게 한다)

***재해조사의 원칙**

- 3E, 4M에 따라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.
- 3E는 관리적 원인, 기술적 원인, 교육적 원인이며, 4M은 인적 요인, 기계적 요인, 작업적 요인, 관리적 요인이다.
-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.
-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다.

***안전관리**

- 안전관리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를 뜻한다.
-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,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
-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.

■ 3차시-건강진단 및 뇌심혈관계 질환관리

***뇌심혈관 질환 원인**

- 스트레스는 흡연, 음주, 폭식 등을 불러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.
-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, 부정맥을 유발하며, 동맥경화를 촉진해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.
- 우울증은 흡연, 신체활동 감소, 비만 등과 관련이 있으며, 고혈압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된다.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중요하다.
- 경쟁적이고, 성취욕이 강하며,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.

***뇌심혈관질환의 원인 중 교정할 수 있는 요인**

- 기초질환(고혈압, 당뇨 등)
- 혈중 지질변인
- 작업 관련 요인

***건강진단**

- 건강진단이란 자기 스스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때 의사의 진찰이나 의학적 검사를 통해 신체적인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건강관리 방법을 말한다.
- 특히, 근로자들은 작업환경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

***건강진단의 종류**

-일반 건강진단이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.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,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며, 근로자의 고혈압, 당뇨 등 일반적인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

-특수 건강진단이란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.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~24개월 주기로 실시하며, 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다.

-배치 전 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확보해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 추후 업무상 질병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.

-수시 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, 피부질환, 기타 건강장애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.

■ 4차시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(2) - 금연교육

*니코틴의 중독

-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은 7~10초 만에 뇌로 들어가 생리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.

-담배를 피우고 30분 정도 경과하면 정맥 내 니코틴 농도는 최고 농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데, 흡연자는 이때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.

-각 개인에서 니코틴에 대한 선호 정도는 흡연 경력 초기에 나타나고,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갖게 된다.

-흡연자들은 니코틴 흡수가 너무 적은 것(금단증상 초래)도, 너무 많은 것(과량으로 인한 기분 나쁜 영향)도 피하려고 한다.

*간접흡연

-간접흡연 담배연기는 발암물질이며, 안전한 허용용량이 없다.

-담배연기에는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, 최소 250여종은 해롭다고 알려져 있다. 그 중 50종 이상에서 발암성이 인정되었다.

-성인에서, 간접흡연은 심각한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초래하며, 대표적인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과 폐암이 있다.

-영아에서는 돌연사 증후군을 일으키며 임신부에서는 저체중아 출산을 초래한다.

*금연과 일반적 건강이득

-담배를 끊게 되면 모든 연령대에서 즉각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이득이 발생한다.

-담배를 피면서 생긴 추가 위험은 담배를 끊자마자 곧 감소하고, 적어도 10~15년간은 이러한 감소 패턴이 지속된다.

-35세 이전에 담배를 끊는다면 평균 수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과 비슷해진다.

-사망률에 금연이 미치는 영향은 젊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지만, 어느 연령에서 끊더라도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계속 피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.

***담배규제기본협약(FCTC)**

-국제보건기구(WHO)에서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을 알리고,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‘담배규제기본협약(FCTC)’를 채택하여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***담배 연기 속, 건강과 관련된 중요 성분 3가지**

- 타르
- 일산화탄소
- 니코틴

***흡연**

-흡연과 질병은 양-반응 관계에 있어, 흡연시작 연령, 흡연 개수, 흡연 년수 등이 높은 사망률과 비례한다.

■ 5차시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(3) - 근골격계질환 예방

***근골격계질환**

- 정의: 목, 어깨, 허리, 상·하지의 신경/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
- 원인: 부적절한 작업 자세, 반복적인 동작,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, 작업환경 불량, 빠른 작업속도
- 근골격계예방 운동법: 다리 교대 운동, 근육강화 운동, 스트레칭,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
-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대책 실시만이 대안이다.

***근골격계질환의 발생요인**

- 작업환경 불량
- 빠른 작업속도
- 과도한 작업량이나 많은 작업시간 또한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

■ 6차시 MSDS와 GHS

***MSDS 제도의 도입 배경**

-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
-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
-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, 국가 차원의 종합적,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

-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자

***GHS**

-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(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)으로써,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,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.

***GHS 경고표지 부착 방법**

-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유해, 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GH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.

-화학물질을 사용,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

-화학물질 함유제제 단위로 용기 및 포장에 인쇄물 등을 부착한다.

-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.

***GHS의 이행으로 인한 기대효과**

-국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유해, 위험성 정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환경보호가 강화

-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 안정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제공

-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이 용이

-화학물질을 중복해서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

■ 7차시 성희롱 예방교육

***직장 내 성희롱**

-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,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(원하지 않는)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***직장 내 성희롱 특징**

-피해자는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, 피해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도 우려가 되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.

-성희롱은 행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어렵다.

-20-30대의 젊은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.

-기업 차원에서의 대안이 부족하다.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, 행위자의

부서 전환 배치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. 많은 기업의 조직문화가 성희롱에 관대한데,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다.

***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별**

-<남녀고용평등과 일/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>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는 사업주, 상급자, 다른 근로자,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로 본다.

-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,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주, 근로자로 보며 고객은 제외한다.

-<남녀고용평등과 일/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>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근로자이다.

-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제한이 없다.

■ 8차시 개인정보보호교육-개인정보보호

***개인정보 보호 원칙**

-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
-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*개인정보의 수집단계**

-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-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
-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/이용 목적,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의 사항을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
-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***개인정보보호 수칙**

-적절한 방법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,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관행이 아닌 법률근거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.

-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, 개인정보 처리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

할 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하나로 볼 수 있다.

-웹 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 취급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 등은 정당한 요구이다.

-개인정보 취급현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, 보유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목적 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.

***개인정보의 처리 제한**

-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/신념, 노동조합/정당의 가입/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 리할 수 없다.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.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

-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-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,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*개인정보자기결정권**

-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,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***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**

-민간정보수집금지의 원칙

-최소수집의 원칙